

# 태국의 투자 관련 법률 개관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투자 관련 태국 법률
- III. 맷음말

## I. 들어가는 말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외국 자본의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과 투자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태국의 경우, 총리실 산하 정부기관으로 투자청(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ลงทุน, Board of Investment)<sup>1</sup>을 설치하여 투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에도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77년

<sup>1</sup> 태국어 명칭을 직역하면 ‘투자촉진위원회사무처’로 번역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명칭 ‘투자청’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도 이 명칭을 따른다.



투자촉진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การลงทุน พ.ศ. ๒๕๒๐/ Investment Promotion Act, B.E. 2520 (1977))」, 「민상법전(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Civil and Commercial Code)」, 「1999년 외국인사업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๕๔๒/ Foreign Business Act, B.E. 2542 (1999))」, 「2017년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증진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พิ่มขี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 พ.ศ. ๒๕๖๐/ Nation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or Targeted Industries Act, B.E. 2560 (2017))」,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 투자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PUBLIC-PRIVATE PARTNERSHIP ACT, B.E. 2562 (2019))」 등을 제정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와 관련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률 중 대부분은 태국인과 외국인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는 법률들이다. 다만, 「1999년 외국인사업법」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외국인에게 허용 또는 제한되는 업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언급한 5개 법률을 중심으로 태국 투자 관련 법률 개요 및 주요 규정들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 II. 투자 관련 태국 법률

### 1. 「1977년 투자촉진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การลงทุน พ.ศ. ๒๕๒๐)」

이 법은 1977년 4월 29일에 제정된 이후 1991년과 2001년 및 2017년에 각 한번씩, 총 세번에 걸쳐 일부 개정이 단행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총 60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 법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 &lt;「1997년 투자촉진법」 목차&gt;

제1장 위원회, 고문 및 담당관(หมวด ๑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ที่ปรึกษาและพนักงานเจ้าหน้าที่) 제6조 – 제15조

제2장 지원 신청 및 제공(หมวด ๒ กระบวนการให้การส่งเสริม) 제16조 – 제23조

제3장 권리와 혜택(สิทธิและประโยชน์) 제24조 – 제37조

제4장 기계와 원료 및 필수 자재(เครื่องจักร วัตถุดิบและสัตว์จำเป็น) 제38조 – 제42조

제5장 보증 및 보호(หลักประกันและคุ้มครอง) 제43조 – 제53조

제6장 권리와 혜택의 철회(การเพิกถอนสิทธิและประโยชน์) 제54조 – 제56조

제7장 최종 규정(บทสุดท้าย) 제57조 – 제60조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법은 외국인에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촉진법」과는 적용 대상에 대한 전제에서부터 차이점이 있지만, 투자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태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법률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 2. 「민상법전(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의 「민상법전」은 민법과 상법을 아울러 구성하고 있는 실체법(substantive law)으로, 1908년 쿨라롱꼰 대왕<sup>2</sup>의 재위 중에 독일 민법

<sup>2</sup> 태국어 정식 명칭으로는 พระบาทสมเด็จพระปรมินทรมหาภูมิพลอดุลยเดช(프라밧සدت프라뽀라민타라마하쿨라롱꼰 프라쑨쳅끌라오짜오유후어)이다. 현 왕조인 짜끄리 왕조의 5대 군주로 흔히 라마 5세라고 칭하기도 한다. 1853년 9월 20일에 출생하여 1910년 10월 23일에 사망하였으며, 만 15세의 어린 나이인 1868년 10월 1일에 즉위하여 1910년 10월 23일까지 재위하였다. 2016년에 즉위한 마하와치라롱꼰(태국어 정식 명칭 พระบาทสมเด็จพระปรมินทรมหาภูมิพลอดุลยเดช(พร瓦希拉เกล้าเจ้าอยู่หัว), 즉 라마 10세의 증조부이다. 서구 열강의 압박 속에서도 태국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업적으로는 노예제 폐지 및 교통, 행정, 사법, 우편, 철도 정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태국 근대사에 지대한

(Bürgerliches Gesetzbuch)과 일본 민법(民法)을 토대로 하고, 프랑스 민법 (Code civil des Français)과 스위스 민법(Zivilgesetzbuch)을 참조하여 7인의 프랑스인 법률가로 이루어진 법률안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상법전 초안 작업에 착수했다.

이 법전은 다음과 같은 총6개의 권으로 구성된 1755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다.

### 〈「민상법전」 목차〉

서두(ຂໍຄວາມເປົ້ອງຕັນ) 제1조 – 제3조

제1권 총칙(ບរາພ ອ ພັກທີ່ໄປ)

제1편 통칙(ລັກຜະນະ ອ ບທເບີດເສົ້າຈໍທີ່ໄປ) 제4조 – 제14조

제2편 인(ລັກຜະນະ ແ ນຸຄຄລ) 제15조 – 제136조

제3편 물건(ລັກຜະນະ ຖ ທີ່ພູຍື) 제137조 – 제148조

제4편 법률 행위(ລັກຜະນະ ດ ນິຕິກາຣມ) 제149조 – 제193조

제5편 기간(ລັກຜະນະ & ຂະຢະເວລາ) 제193조의1 – 제193조의8

제6편 시효(ລັກຜະນະ ລ ອາຍຸຄວາມ) 제193조의9 – 제193조의35

제2권 채무(ບරາພ ແ ໜີ້)

제1편 통칙(ລັກຜະນະ ອ ບທເບີດເສົ້າຈໍທີ່ໄປ) 제194조 – 제353조

제2편 계약(ລັກຜະນະ ແ ສົມບູກ) 제354조 – 제394조

제3편 무권대리(ລັກຜະນະ ຕ ຈົດກາຮາງນອກສັ່ງ) 제395조 – 제405조

공헌을 했다. 이러한 업적들로 인해 태국에서 대왕 칭호를 받은 군주 중 한 사람이다.



제4편 부당 이득(ลักษณะ ๔ ลักษณะควรได้) 제406조 – 제419조

제5편 침해(ลักษณะ ๕ ละเมิด) 제420조 – 제452조

제3권 개별계약(บรรพ ๓ เอกเทศสัญญา)

제1편 매매(ลักษณะ ๑ ซื้อขาย) 제453조 – 제517조

제2편 교환(ลักษณะ ๒ แลกเปลี่ยน) 제518조 – 제520조

제3편 증여(ลักษณะ ๓ ให้) 제521조 – 제536조

제4편 임대차(ลักษณะ ๔ เช่าทรัพย์) 제537조 – 제571조

제5편 임차 구매(ลักษณะ ๕ เช่าซื้อ) 제572조 – 제574조

제6편 고용(ลักษณะ ๖ จ้างแรงงาน) 제575조 – 제586조

제7편 도급(ลักษณะ ๗ จ้างทำของ) 제587조 – 제607조

제8편 운송(ลักษณะ ๘ รับขน) 제608조 – 639조

제9편 대차(ลักษณะ ๙ ยืม) 제640조 – 제656조

제10편 신탁(ลักษณะ ๑๐ ฝากทรัพย์) 제657조 – 제679조

제11편 보증(ลักษณะ ๑๑ ค้ำประกัน) 제680조 – 제701조

제12편 저당(ลักษณะ ๑๒ จำนำ) 제702조 – 제746조

제13편 담보(ลักษณะ ๑๓ จำนำ) 제747조 – 제769조

제14편 물품의 창고 보관(ลักษณะ ๑๔ เก็บของในคลังสินค้า) 제770조 – 제796조

제15편 대리인(ลักษณะ ๑๕ ตัวแทน) 제797조 – 제844조

제16편 중개인(ลักษณะ ๑๖ นายหน้า) 제845조 – 제849조

제17편 타협(ลักษณะ ๑๙ ประนีประนอมความ) 제850조 – 제852조

제18편 도박과 내기(ลักษณะ ๑๙ กາງພັນ ແລະ ຫັນຕົກ) 제853조 – 제855조

제19편 경상계정(ลักษณะ ๑๙ ບໍ່ມີເຊີນສະຫຼຸດ) 제856조 – 제860조

제20편 보험(ลักษณะ ๒๐ ປະກັນຍັງ) 제861조 – 제868조

제21편 유가증권(ลักษณะ ๒๑ ຕັ້ງເຈີນ) 제869조 – 제1011조

제22편 동업 및 회사(ลักษณะ ๒๒ ຫຸ້ນສ່ວນແລະ ປະລິບັດ) 제1012조 – 제1273조의4

제23편 협회(ลักษณะ ๒๓ ສາມາຄມ) 제1274조 – 제1297조(삭제)

#### 제4권 재산(ບຽບ ແລະ ທັບຍືສິນ)

제1편 통칙(ลักษณะ ๑ ບທເປົດເສົ້າຈ່າໄປ) 제1298조 – 제1307조

제2편 소유권(ลักษณะ ๒ ກຽມສີທີ່) 제1308조 – 제1366조

제3편 점유(ลักษณะ ๓ ຄຣອບຄວາງ) 제1367조 – 제1386조

제4편 지역권(ลักษณะ ๔ ກາງຈຳຍອມ) 제1387조 – 제1401조

제5편 거주(ลักษณะ ๕ ຂາດໝາຍ) 제1402조 – 제1409조

제6편 지상권(ลักษณะ ๖ ສີທີ່ເໜືອພື້ນດິນ) 제1410조 – 제1416조

제7편 용익권(ลักษณะ ๗ ສີທີ່ເກີບກິນ) 제1417조 – 제1428조

제8편 부동산에서의 부대 책무(ลักษณะ ๘ ກາງຈະຕິດພັນໃນອັນຫາວິມທັງໝົດ) 제1429조 – 제1434조

#### 제5권 가족(ບຽບ ແລະ ຄຣອບຄວາງ)

제1편 혼인(ลักษณะ ๑ ກາຮສມວສ) 제1435조 – 제1535조

제2편 부모와 자(ลักษณะ ๒ ປິດມາຮາດກັບບຸດຮ) 제1536조 – 제1598조의37

제3편 부양비(ลักษณะ ค่าอุปการะเลี้ยงดู) 제1598조의38 – 제1598조의41

제6권 상속(บภพ ๖ มรดก)

제1편 통칙(ลักษณะ ๑ บทเบ็ดเสร็จทั่วไป) 제1599조 – 제1619조

제2편 유산 상속에서의 법적 권리(ลักษณะ ๒ สิทธิ์โดยชอบในการรับมรดก) 제1620조 – 제1645조

제3편 유언(ลักษณะ ๓ พินัยกรรม) 제1646조 – 제1710조

제4편 유산의 분배 및 처리(ลักษณะ ๔ วิธีจัดการและปันทรัพย์มรดก) 제1711조 – 제1752조

제5편 상속인이 없는 유산(ลักษณะ ๕ มรดกที่ไม่มีผู้รับ) 제1753조

제6편 시효(ลักษณะ ๖ อายุความ) 제1754조 – 제1755조

이 법전의 시행일은 각 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1권은 1992년 6월 7일, 제2권은 1925년 1월 1일, 제3권은 1928년 4월 1일, 제4권은 1931년 4월 1일, 제5권은 1976년 10월 16일, 제6권은 1935년 10월 1일에 각각 시행되었으며, 이슬람교도가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태국 남부 지역의 빛파니(จังหวัดปัตตานี), 나라티왓(นราธิวาส), 얄라(ยะลา) 및 싸둔(สาตุล) 도(짱왓<sup>3</sup>)에서 제5권과 제6권을 대신하여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sup>4</sup>

이 법전에서 살펴보아야 할 투자 관련 규정은 제3권 개별계약 중 제22편 동업 및 회사 부분의 내용이다.

제22편은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3장 합자회사, 제4장 유한회사,

<sup>3</sup> จังหวัด(짱왓)은 태국의 가장 큰 지방 행정 단위로, 현재 태국은 방콕시를 제외하고 총76개의 짱왓으로 구분된다.

<sup>4</sup> Wikipedia 태국 「민상법전」 요약 편집

<https://th.wikipedia.org/wiki/%E0%B8%9B%E0%B8%A3%E0%B8%B0%E0%B8%A1%E0%B8%A7%E0%B8%A5%E0%B8%81%E0%B8%8E%E0%B8%AB%E0%B8%A1%E0%B8%B2%E0%B8%A2%E0%B9%81%E0%B8%9E%E0%B9%88%E0%B8%87%E0%B9%81%E0%B8%A5%E0%B8%B0%E0%B8%9E%E0%B8%B2%E0%B8%93%E0%B8%B4%E0%B8%8A%E0%B8%A2%E0%B9%8C>

제5장 등록 합작회사와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청산, 제6장 등록 합작회사와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취소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회사의 형태를 정의하고 이를 설립, 청산, 취소하는 것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3. 「1999년 외국인사업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๕๔๒)」

「1999년 외국인사업법」은 1999년 11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제정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었다. 총46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정의 이외에 외국인의 사업 운영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년 외국인 사업법」 제4조 일부 번역문 및 원문〉

“외국인”이란

Worldwide Information Center

- (1) 태국 국적을 갖지 아니 한 자연인
- (2) 태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
- (3) 태국에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 법인
  - (ㄱ)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개인 혹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본인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ㄴ)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관리자가 있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또는 등기된 합명회사(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 (4)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이 자본인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인이 법인 자본 총액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태국 국내에서 등기한 법인

“คนต่างด้าว” 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

(๑) บุคคลธรรมชาติซึ่งไม่มีสัญชาติไทย

(๒) นิติบุคคลซึ่ง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๓) นิติบุคคลซึ่งจดทะเบียน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และมีลักษณะดังต่อไปนี้<sup>5</sup>

(ก) นิติบุคคลซึ่งมีหุ้นอันเป็นทุนด้ังแต่กี่หนึ่งของนิติบุคคลนั้นถือโดยบุคคลตาม (๑) หรือ (๒) หรือนิติบุคคลซึ่งมีบุคคลตาม (๑) หรือ (๒) ลงทุนมีมูลค่าตั้งแต่กี่หนึ่งของทุนทั้งหมดในนิติบุคคลนั้น

(ข) ห้างหุ้นส่วนจำกัดหรือห้างหุ้นส่วนสามัญที่จดทะเบียน ซึ่งหุ้นส่วนผู้จัดการหรือผู้จัดการเป็นบุคคลตาม (๑)

(๔) นิติบุคคลซึ่งจดทะเบียน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ซึ่งมีหุ้นอันเป็นทุนด้ังแต่กี่หนึ่งของนิติบุคคลนั้นถือโดยบุคคลตาม (๑) (๒) หรือ (๓) หรือนิติบุคคลซึ่งมีบุคคลตาม (๑) (๒) หรือ (๓) ลงทุนมีมูลค่าตั้งแต่กี่หนึ่งของทุนทั้งหมดในนิติบุคคลนั้น

이 법에 따르면 신문·방송 사업,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고대유물 등  
의 매매, 불상 등의 제조 및 판매, 국가 안보에 관련되거나 문화·예술, 전통  
·관습, 민속공예 또는 천연자원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업들에 대  
해 외국인의 운영이 허가되지 않는다.<sup>5</sup>

#### 4. 「2017년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증진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พิ่มขีด 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 พ.ศ. ๒๕๖๐)」

2006년-2014년 이후 태국의 투자 증가율 평균은 연 2%, GDP 성장률 평균  
은 연 3.4%로 다음 단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 불충분했을 뿐만 아니  
라, 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태국

<sup>5</sup> 「1999년 외국인사업법」 첨부 목록 참조

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중점 육성 산업 그룹 및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태국 산업부는 잠재력이 있는 기존 산업(First S-Curve) 5개 그룹 및 미래 산업(New S-Curve) 5개 그룹의 2가지 형태에서 태국이 경제 성장(S-Curve)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조 하에 “중점육성산업 10 제언: 미래를 위한 경제 추진(NEW ENGINE OF GROWTH)”을 상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17일에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sup>6</sup>

태국 산업부가 제안한 중점 육성 산업은 다음과 같다.

#### 〈태국 중점 육성 산업〉<sup>7</sup>

5 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ดิมที่มีศักยภาพ (First S-curve) ประจำปัจจุบัน	잠재력이 있는 기존 산업 5 (First S-Curve)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ยานยนต์สมัยใหม่ (Next-Generation Automotive)	차세대 자동차 산업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อัจฉริยะ (Smart Electronics)	스마트 전자 산업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กลุ่มรายได้ดี และ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ชิงสุขภาพ (Affluent, Medical and Wellness Tourism)	고소득층 대상 관광 산업 및 의료 관광 산업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เกษตรและเทคโนโลยีชีวภาพ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농업 및 생명공학

<sup>6</sup> 태국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10 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กลไกขับเคลื่อนเศรษฐกิจเพื่ออนาคต (NEW ENGINE OF GROWTH) 요약 편집

<sup>7</sup> 태국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10 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กลไกขับเคลื่อนเศรษฐกิจเพื่ออนาคต (NEW ENGINE OF GROWTH) 자료 편집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แปรรูปอาหาร  
(Food for the Future)

식품 가공 산업

5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อนาคต  
(New S-curve) ประจำปี

미래 산업 5  
(New S-Curve)

หุ่นยนต์เพื่ออุตสาหกรรม  
(Robotics)

산업 로봇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บินและโลจิสติกส์  
(Aviation and Logistics)

항공 및 물류 산업

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ชื้อเพลิงชีวภาพและเคมีชีวภาพ  
(Biofuels and Biochemicals)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케미컬 산업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ดิจิทัล  
(Digital)

디지털 산업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แพทย์ครบวงจร  
(Medical Hub)

의료 중심지  
(메디컬 허브) 산업

이와 같이 태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제시된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법적 장치로써 2017년 2월 12일에 「2017년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월 13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총38개조로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7년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증진법」 목차>

제1장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증진 정책 위원회(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นโยบายเพิ่มขี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 제5조 – 제14조

제2장 선정과 협상 및 지원 제공(การสรรหาและเจรจา และการ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 제16조 – 제22조

제3장 권리 및 혜택(สิทธิและประโยชน์) 제23조 – 제27조

제4장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증진 기금

(กองทุนเพิ่มขี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 제28조 – 제37조

제5장 경과 규정(บทเฉพาะกาล) 제38조

## 5.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 투자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 투자법」은 민관 합작 투자에 관한 법률로 투자 관련 법률 중 가장 최근인 2019년 3월 6일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튿날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관 합작 투자 관련 법률로 「2013년 국가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ให้เอกชนร่วมลงทุนในกิจการของรัฐ พ.ศ. ๒๕๖๑)」이 2013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3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총70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다.

###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 투자법」 목차>

제1장 총칙(บททั่วไป) 제6조 – 제11조

제2장 합작 투자 사업 구축 계획(แผนกว่าจัดทำโครง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 제12조

제3장 정부와 민간의 합작 투자 정책 위원회(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นโยบาย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제13조 – 제21조

제4장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การจัดทำและดำ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 제22조 – 제49조

제5장 공익을 위한 권한 행사(การใช้อำนาจ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สาธารณะ) 제50조

제6장 정부와 민간의 합작 투자 지원 기금(กองทุนส่งเสริม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제51조 – 제59조

제7장 잡칙(บทเบ็ดเตล็ด) 제60조 – 제62조

제8장 처벌 규정(บทกำหนดโทษ) 제63조

제9장 경과 규정(บทเฉพาะกาล) 제64조 – 70조

이 법은 태국 정부의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법령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각 5가지 법률의 특징과 참고할 사항 등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 〈태국 투자 관련 법률 요약〉

법률명	특징	참고 사항	관련 조목
「1977년 투자 촉진법」	투자와 관련 원칙 등을 규정한 법률로 내외국인의 구별 없음	투자 지원 신청 기준 및 절차, 혜택, 설비 도입 등	제2장 지원 신청 및 제공(제16조–제23조) 제3장 권리와 혜택(제24조 – 제37조) 제4장 기계와 원료 및 필수 자재(제38조–제

			42조)  제5장 보증 및 보호 (제43조-제53조)  제6장 권리와 혜택의 철회(제54조-제56조)
「민상법전」	민법과 상법을 아우르는 실체법	회사의 종류와 각 회사별 설립 및 청산 절차 등	제3권 개별 계약 종 제22편 동업 및 회사 (제1012조 – 제1273조의4)
「1999년 외국인사업법」	외국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것을 불허하는 사업 등을 정하는 법률	사업 운영이 가능한 외국인의 유형, 외국인이 사업 개시를 위한 최저 자본금, 처벌 규정, 사업 제한 또는 금지 목록 등	제6조-제22조, 제34조-제45조, 첨부 목록
「2017년 중점 육성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증진법」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육성 산업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 육성 산업 선정 절차, 지원 신청,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권리와 혜택 등	제2장 선정과 협상 및 지원 제공(제16조-제22조)  제3장 권리 및 혜택 (제23조-제27조)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 투자법」	민관 합작 투자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	민관 합작 투자 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등	제2장 합작 투자 사업 구축 계획(제12조)  제4장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제22조-제49조)

### III. 맷음말



---

이상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5가지 태국 법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세계 각 나라들이 투자와 관련한 법률 제도를 갖추는 이유는 외국인의 자국 투자 유치가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외에도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 특히 취약 산업 및 중점 산업 등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간과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에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 나라의 투자 지원 혜택 등의 장점 이외에도 여러가지 규제나 제한 등의 단점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등의 제반 사항 등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장단점과 기타 제반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나라의 투자 지원이나 혜택 등에 관해 규정한 법령 이외에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법령 및 제도 등의 법적 장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및 참고자료 □

- 대한민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태국: 「1977년 투자촉진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searchText=%25ED%2588%25AC%25EC%259E%2590%25EC%25B4%2589%25EC%25A7%2584%25EB%25B2%2595&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2&searchNtnl=TH&pageIndex=1&CTS\\_SEQ=36022&AST\\_SEQ=1143](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searchText=%25ED%2588%25AC%25EC%259E%2590%25EC%25B4%2589%25EC%25A7%2584%25EB%25B2%2595&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2&searchNtnl=TH&pageIndex=1&CTS_SEQ=36022&AST_SEQ=1143))
- 대한민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태국: 「민상법전」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searchText=%25EB%25AF%25BC%25EC%2583%2581%25EB%25B2%2595%25EC%25A0%2584&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2&searchNtnl=TH&pageIndex=1&CTS\\_SEQ=36021&AST\\_SEQ=1143](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searchText=%25EB%25AF%25BC%25EC%2583%2581%25EB%25B2%2595%25EC%25A0%2584&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2&searchNtnl=TH&pageIndex=1&CTS_SEQ=36021&AST_SEQ=1143))
- 대한민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태국: 「1999년 외국인사업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searchText=%25EC%2599%25B8%25EA%25B5%25AD%25EC%259D%25B8%25EC%2582%25AC%25EC%2597%2585&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2&searchNtnl=TH&pageIndex=1&CTS\\_SEQ=36023&AST\\_SEQ=1143](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searchText=%25EC%2599%25B8%25EA%25B5%25AD%25EC%259D%25B8%25EC%2582%25AC%25EC%2597%2585&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2&searchNtnl=TH&pageIndex=1&CTS_SEQ=36023&AST_SEQ=1143))
- 대한민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태국: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searchText=%25ED%2595%25A9%25EC%259E%2591%25ED%2588%25AC%25EC%259E%2590&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2&searchNtnl=TH&pageIndex=1&CTS\\_SEQ=48158&AST\\_SEQ=289](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searchText=%25ED%2595%25A9%25EC%259E%2591%25ED%2588%25AC%25EC%259E%2590&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2&searchNtnl=TH&pageIndex=1&CTS_SEQ=48158&AST_SEQ=289))
- 태국 법령위원회사무처(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กฤษฎีกา): 「2017년 중점 육성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증진법」

원문본 (<https://www.krisdika.go.th/librarian/get?sysid=768831&ext=pdf>)

영문본 (<https://www.krisdika.go.th/librarian/get?sysid=810039&ext=pdf>)

- 태국, 옴브즈만 사무처(สำนักงานผู้ตรวจการแผ่นดิน, Office of the Ombudsman):

“아시안 경제공동체를 향한 태국 민상법전 개정 방침”

([https://www.ombudsman.go.th/10/ebooks/57\\_1/%E0%B9%81%E0%B8%99%E0%B8%A7%E0%B8%97%E0%B8%B2%E0%B8%87%E0%B8%81%E0%B8%B2%E0%B8%A3%E0%B8%9B%E0%B8%8F%E0%B8%B4%E0%B8%A3%E0%B8%B9%E0%B8%9B%E0%B8%9B%E0%B8%A3%E0%B8%80%E0%B8%A1%E0%B8%A7%E0%B8%A5%E0%B8%81%E0%B8%8E%E0%B8%AB%E0%B8%A1%E0%B8%B2%E0%B8%A2%E0%B9%81%E0%B8%9E%E0%B9%88%E0%B8%87%E0%B9%81%E0%B8%A5%E0%B8%80%E0%B8%9E%E0%B8%9E%E0%B8%93%E0%B8%8B4%E0%B8%8A%E0%B8%A2%E0%B9%8C%E0%B9%84%E0%B8%97%E0%B8%A2%E0%B8%AA%E0%B8%9E%E0%B9%88%E0%B8%9B%E0%B8%A3%E0%B8%80%E0%B8%8A%E0%B8%A3%E0%B8%9E%E0%B8%90%E0%B8%81%E0%B8%81%E0%B8%80%E0%B8%88%E0%B8%AD%E0%B8%B2%E0%B9%80%E0%B8%8B%E0%B8%85%E0%B8%A2%E0%B8%99.PDF](https://www.ombudsman.go.th/10/ebooks/57_1/%E0%B9%81%E0%B8%99%E0%B8%A7%E0%B8%97%E0%B8%B2%E0%B8%87%E0%B8%81%E0%B8%B2%E0%B8%A3%E0%B8%9B%E0%B8%8F%E0%B8%B4%E0%B8%A3%E0%B8%B9%E0%B8%9B%E0%B8%9B%E0%B8%A3%E0%B8%80%E0%B8%A1%E0%B8%A7%E0%B8%A5%E0%B8%81%E0%B8%8E%E0%B8%AB%E0%B8%A1%E0%B8%B2%E0%B8%A2%E0%B9%81%E0%B8%9E%E0%B9%88%E0%B8%87%E0%B9%81%E0%B8%A5%E0%B8%80%E0%B8%9E%E0%B8%9E%E0%B8%93%E0%B8%8B4%E0%B8%8A%E0%B8%A2%E0%B9%8C%E0%B9%84%E0%B8%97%E0%B8%A2%E0%B8%AA%E0%B8%9E%E0%B9%88%E0%B8%9B%E0%B8%A3%E0%B8%80%E0%B8%8A%E0%B8%A3%E0%B8%9E%E0%B8%90%E0%B8%81%E0%B8%81%E0%B8%80%E0%B8%88%E0%B8%AD%E0%B8%B2%E0%B9%80%E0%B8%8B%E0%B8%85%E0%B8%A2%E0%B8%99.PDF))

- Wikipedia, 태국: 「민상법전」

(<https://th.wikipedia.org/wiki/%E0%B8%9B%E0%B8%A3%E0%B8%80%E0%B8%A1%E0%B8%A7%E0%B8%A5%E0%B8%81%E0%B8%8E%E0%B8%AB%E0%B8%A1%E0%B8%80%E0%B8%8A2%E0%B8%9E%E0%B9%88%E0%B8%87%E0%B9%81%E0%B8%A5%E0%B8%80%E0%B8%8B0%E0%B8%9E%E0%B8%80%E0%B8%93%E0%B8%8B4%E0%B8%8A%E0%B8%A2%E0%B9%8C>)

- 태국 투자청(Thailand Board of Investment): “Thailand 4.0 - a new value-based economy”

([http://www.boi.go.th/upload/content/Thailand,%20Taking%20off%20to%20new%20heights%20@%20belgium\\_5ab4e8042850e.pdf](http://www.boi.go.th/upload/content/Thailand,%20Taking%20off%20to%20new%20heights%20@%20belgium_5ab4e8042850e.pdf))

- 태국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10 암트사하그로먼페어마이

กลไกขับเคลื่อนเศรษฐกิจเพื่ออนาคต(NEW ENGINE OF GROWTH)<sup>8</sup>

(<http://eec.vec.go.th/en-us/%E0%B9%80%E0%B8%81%E0%B8%B5%E0%B9%88%E0%B8%A2%E0%B8%A7%E0%B8%81%E0%B8%B1%E0%B8%9A-EEC/10-%E0%B8%AD%E0%B8%B8%E0%B8%95%E0%B8%AA%E0%B8%B2%E0%B8%AB%E0%B8%81%E0%B8%A3%E0%B8%A3%E0%B8%A1%E0%B9%80%E0%B8%9B%E0%B9%89%E0%B8%B2%E0%B8%AB%E0%B8%A1%E0%B8%B2%E0%B8%A2>)



<sup>8</sup> 중점육성산업 10: 미래를 위한 경제 추진 메커니즘(NEW ENGINE OF GROWTH)